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29
----------	-----

2025. 6. 11.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2025. 5. 30. 노애자 의원 등 12인

나. 상정의결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노애자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안전보안관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본 조례안은 생활속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 등 안전문화운동의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등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제2호의 안전문화활동 정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제3조제9호의2”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 안 제3조는 위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강남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공정하고 다양한 인재의 모집을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4조는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안 제5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 및 부대표

는 안전보안관 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 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강남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구청장은 안 제6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현황을 관리하고 안전보안관이 해촉사유가 발생할 시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일상생활 속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행정안전부가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8년¹⁾부터 추진한 “안전보안관” 제도의 시행 근거와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0년 5월 제시한 ‘안전보안관 운영 조

1) (구) 우리동네 안전감시단(2015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운영되다가 “안전보안관”으로 개편되었음.

례 표준안’에 따라, 현재까지 조례 없이 운영되어 온 안전보안관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화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 기반의 생활 안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안되었고, 제정 역시 관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의 기본취지에도 부합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529

제안연월일: 2025. 6. 1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1. 수정이유

안전보안관 구성 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현재 위촉되어 있는 안전보안관도 62명에 달하여, 해당 조문은 수정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문화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 구성 인원 제한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보안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u>안전보안관은 50명 이내로 구성</u> <u>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 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 보안관으로 위촉한다.</p> <p>1. ~ 5. (생 략) ② (생 략)</p>	<p>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u>서울특별시</u> ----- ----- ----- ----- ----- ----- -----.</p> <p>1. ~ 5.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를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호선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대표는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부대표는 대표 부재시 대표 역할을 대리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강남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또는 강남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4조의 임기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노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9
----------	-----

발의연월일 : 2025. 5. 30.

발 의 자 : 노애자·윤석민·강을석·
김형대·김영권·황영각·
박다미·전인수·손민기·
김광심·이향숙·이성수
의원(이상 12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안전보안관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마.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를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안전보안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안전보안관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호선한다.

-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대표는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부대표는 대표 부재시 대표 역할을 대리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강남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또는 강남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4조의 임기를 준용한다.